

#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및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안내

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

- ◎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
- ◎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당부
  - \* [www.kahis.go.kr](http://www.kahis.go.kr) : KAHIS (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)  
(관련근거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3 및 시행령 제15조의2)
  - \* [eminwon.qia.go.kr](http://eminwon.qia.go.kr) :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
- ◎ 아울러,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
-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## ※ 축산관계자의 범위

1.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\* - 소, 산양, 면양, 돼지, 닭, 사슴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
2.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\* - 고용계약 체결 유·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
3. 수의사 - 동물병원 개설자·고용인, 수의·축산 공무원, 공중병역수의사, 학계·축산단체 종사 수의사(수의학·축산학·동물자원학 전공 교수·강사·대학원생), 축산단체·동물원·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
4.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
5. 가축방역사 - 가축방역사 및 수의·축산 분야 직원
6.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- 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, 동물

농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

7. 사료를 판매하는 자 - 사료제조업 ·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

8. 가축분뇨를 수집 · 운반하는 자

9. 가축시장의 종사자 -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· 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

10. 원유를 수집 · 운반하는 자 -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

11. 도축장의 종사자

\* 동거가족 :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)

## 축산관계자 정보 KAHIS 자진등록 방법

### 1 KAHIS 홈페이지(www.kahis.go.kr) 접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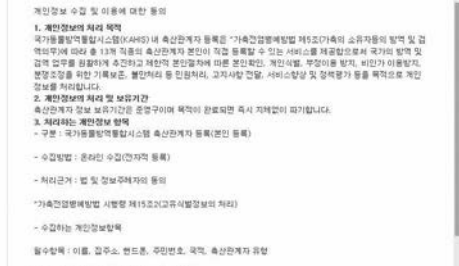
### 2 검역본부(eminwon.qja.go.kr) 접속



### 3 “개인정보처리방침” 동의

#### 개인정보처리방침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

### 4 “축산관계자 등록” 후 저장

#### 축산관계자 정보

필수선택 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축산관계자유형, 핸드폰 번호, 국적, 국내주소)을 모두 입력 후 저장 선택

※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: 032-740-2999